

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(FMS) 사용법

- 안전취약시설물 조치 편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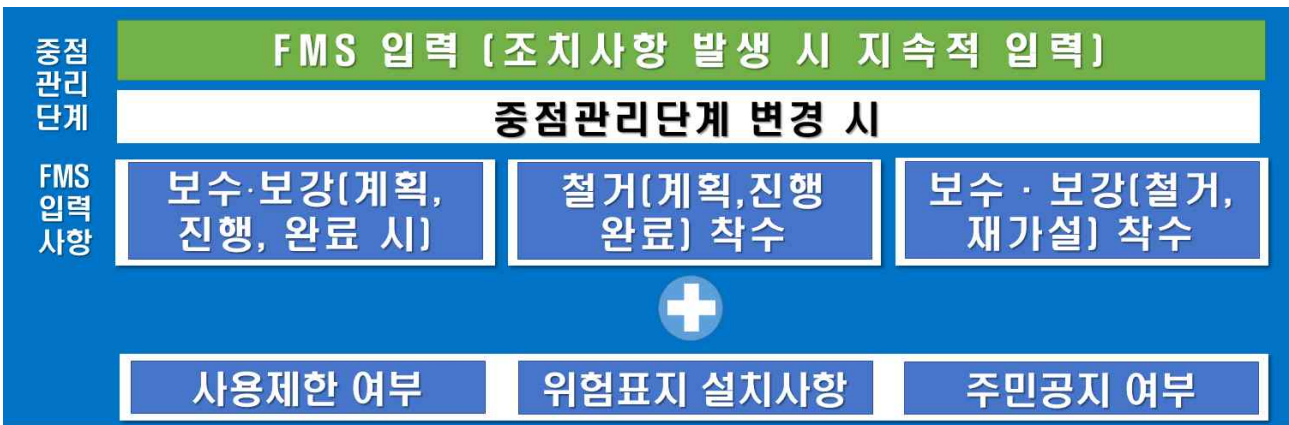
1. 관련 법령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,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점검·진단결과 안전등급이 D·E등급(이하, 안전취약시설물)으로 판정된 경우, 해당 시설물에 대한 **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,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를 시행**하고 **보수·보강 등을 실시**하여야 합니다. 또한 해당 조치내역을 FMS에 입력 후 **취합기관의 승인**을 받아야 합니다.

시설물	D·E 등급 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사항			
조치사항	긴급안전조치 사용제한, 사용금지, 철거,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실시	보수·보강 보수·보강 필요 시 조치 계획 및 진행사항 입력	위험표지 설치 등 위험 표지 설치, 인터넷, 방송 등을 통한 주민공지	안전점검 등 정기안전점검: 1년에 3회 이상 (해빙기, 우기, 동절기) 정밀안전점검: 1년에 1회 이상 (건축물은 2년에 1회 이상) 정밀안전진단: 4년에 1회 이상
	법 제23조	법 제24조	법 제25조	법 제11~12조
제출방법	조치 30일 이내 FMS 입력 후 제출	조치착수 및 조치 완료 30일 이내 FMS 입력 후 제출	설치 및 주민공지 즉시 FMS 입력 후 제출	점검·진단 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FMS 입력 후 제출
처분조항	미조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 미통보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	구조안전과 관련된 보·수보강 후 조치결과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	위험표지 미설치하거나, 주민공지를 미실시한 경우 1,000만원 이하 과태료	점검 미실시 :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진단 미실시 : 2,000만원 이하 과태료
취합기관은 제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확인 후 승인				

2. 조치사항 FMS 입력 시기

중점관리단계(보수·보강, 철거, 재가설 조치) 변경 시, 긴급안전조치, 위험표지 설치, 주민공지 시행 등 **조치사항 발생 시 지속적 입력** (입력사항이 없을 경우 관리주체 미조치로 국회, 상위기관 이행자료 등에 보고 됨.)



3. 조치사항 FMS 입력 방법

취약시설물 조치사항(사용제한 여부, 보수·보강 현황,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등) 입력

1 안전 및 유지관리

2 취약시설물 중점관리

3 과천시 하우저리잠무재스(트)

시설물명	점검연도	안전등급	조치계획 및 진행상황	사용제한여부	주민공지여부	사진	승인상태
아파트101동	2018-05-03	D등급	보수보강 계획중(2019.07.23~2019.09.07)	사용제한 없음	위험표지, 방송 인터넷을 통한 주민공지		작성중
테스트 상수도	2019-03-19	E등급					

- ① 관리주체ID로 로그인 후 [안전 및 유지관리] 클릭
- ② [취약시설물 중점관리] 클릭
- ③ 등록하고자 하는 시설물명 [선택]

4 새로작성

No	작성일	조치계획 및 진행상황	사용제한여부	주민공지여부	사진	승인상태
1	2019-07-22	보수보강 계획중(2019.07.23~2019.07.24) 111	일부 사용제한	위험표지, 방송 인터넷을 통한 주민공지		작성중

- ④ 새로작성 클릭

5

중점관리단계: 선택

기간: [] []

조치계획 및 진행상황: []

사용제한여부: 선택

주민공지여부: 위험표지 방송 인터넷을 통한 주민공지

사진: 위험표지, 방송 인터넷을 통한 주민공지

사용제한: 사용제한

관련점검연도: [] []

작성일: 2019-11-12

작성자: 테스트 관리자1

[저장] [취소]

- ⑤ 해당 내용 작성 후 [저장] 클릭

※ 입력내용 상세

중점관리단계	기간	조치계획 및 진행상황	추가
보수보강, 철거 등 계획~실적 선택	시작일~종료일	진행현황에 대한 내용 입력	
사용제한 여부	제한 여부 선택		
	선택에 따라 간략한 설명 작성		
주민공지여부	위험표지 및 방송·인터넷을 통한 주민공지 실시 시 선택		
	선택에 따라 간략한 설명 작성		
사진 위험표지/방송·인터넷을 통한 주민공지/사용제한	파일 확장자 주의(gif, jpg, jpeg, bmp, png 파일만 가능)		
관련점검진단	관련점검진단 검색하여 선택		
작성일	입력일 작성		
작성자			

※ 중점관리단계를 **추가** 하여 입력 가능

⑥ 작성된 내용 확인 후 **승인요청**

* 결재자: 취합기관

> 건물하나

중점관리단계	기간	조치계획 및 진행상황
보수보강 계획중	2019-07-23 2019-07-24	111
사용제한여부	일부 사용제한 1111	
주민공지여부	위험표지, 방송·인터넷을 통한 주민공지 111	
관련점검진단	정기안전점검(2019.03.20 ~ 2019.03.28)	
작성일	2019-07-22	
작성자	관리주체 테스트 2	
승인상태	작성중	

6
수정
삭제
승인요청
목록

위험표지 설치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4

[별표 4]

위험표지(제21조 관련)

위험표지	위험표지 설치 요령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</p> <p>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.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문의: OO시청·군청·구청, T: (012) 345 - 6789</p> <p>OO 시장·군수·구청장</p> </div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규격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표지판: 1.2m(가로) × 1m(세로) 나. 기둥: 지름 10cm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m 이상 2. 재질: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3. 색상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표지판 바탕: 어두운 노랑 나. 글씨: 검정으로 하되, 붕괴위험지역은 빨강으로 함 다. 기둥: 노랑색 라.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